

『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선우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해 시 차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(안 제3~4조)
- 재정지원(안 제5조)
- 교육 및 홍보(안 제6조)
- 협력체제 구축(안 제7~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
(예상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추정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03. 04. ~ 03. 11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인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피해자의 고통 경감과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